

세법학 1부

【문제 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는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간의 산정이나 기일의 특징에 법정휴일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20점)

<사례>

거주자 甲은 A주식회사(비상장영리내국법인이고,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하 ‘A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乙의 친자(親子)이다. 甲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A회사에 상표권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乙과 공모하여 A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A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 甲은 이 사건 사용료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사용료 상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22년 10월경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A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甲은 위 횡령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3년 5월경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 전부를 A회사에게 반환하였다. 이후 甲은 대법원에서 2024년 9월 24일 횡령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甲의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기타소득으로 재산정하여 2025년 5월 1일 甲에게 2018년, 201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물음 1) 국세기본법령상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1), (2)에 대하여 답하시오. (8점)

(1) 부과제척기간의 취지와 그 기간별 유형을 설명하시오. (역외거래와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제외한다.)

(2) <사례>에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물음 2)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1), (2)에 대하여 답하시오. (12점)

(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와 그 청구사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 <사례>에서 거주자 甲이 2023년 5월경 A회사에게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 전부를 반환한 것이 甲의 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적용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제 2】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사례는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간의 산정이나 기일의 특징에 법정휴일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0점)

<사례 1>

거주자 甲은 2020년 4월 18일 乙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乙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그 직후에 丙 외 4인(이하 ‘최종매수인들’이라고 한다)과 매매대금 합계 30억 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최종매수인들과 乙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종매수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이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세금을 신고·납부한 바가 없다.

관할 세무서장은 2024년 1월 10일 甲이 이 사건 토지를 최종매수인들에게 전매한 것이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억5천만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A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물음 1) <사례 1>과 관련하여 다음 (1), (2)에 대하여 답하십시오. (20점)

(1) 소득세법령상 위법소득의 과세여부에 관하여 논하십시오.

(2) 거주자 甲은 관련 행정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는 전매행위는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A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甲은 이 사건 A처분에 대한 불복 이후에도 매매대금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회복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이 사건 A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십시오.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액의 산정에 계산상 오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례 2>

거주자 甲은 2010년경 쟁점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甲은 2020년 8월 12일 乙은행을 근저당권자로, 丙주식회사(이하 ‘丙회사’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丙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2024년 5월 12일 이 사건 토지는 丁주식회사(이하 ‘丁회사’라 한다)에 낙찰되었고,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丁회사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경락 대금 전액은 乙은행에 배당되었다.

甲은 丙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 상당액을 구상하고자 하였으나, 丙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무자력으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었다. 甲은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甲이 2024년 5월 12일 이 사건 토지를 위 경매절차의 경락인 丁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5년 6월 25일 甲에 대하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B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물음 2) <사례 2>에서 거주자 甲은 채무자인 丙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B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B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양도소득세액의 산정에 계산상 오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0점)

【문제 3】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는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간의 산정이나 기일의 특정에 법정휴일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0점)

<사례 1>

주식회사 A은행(영리내국법인이며,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하 ‘A은행’이라 한다)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면서, 원화예수금이자, 발행 금융채권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신탁계정미지급이자(이하 ‘원화예수금이자 등’이라 한다)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하였다. A은행의 2024 사업연도 수입배당금액은 A은행이 2020 사업연도에 발행주식 총수의 90%를 출자한 영리내국법인 B로부터 받은 것으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2025년 7월 6일 원화예수금이자 등을 모두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시켜 익금불산입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A은행에게 2024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물음 1)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익금산입 대상 배당금액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중 내국법인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5가지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사례 1>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5점)

물음 3) A은행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가능모법인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 이자에 대한 처리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점)

<사례 2>

미합중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 C(이하 'C기구'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에 관한 협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C기구의 수탁은행인 주식회사 D은행(이하 'D은행'이라 한다)은 2024년 4월 중 C기구에게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세율(20%)에 따른 법인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C기구는 2025년 5월 27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D은행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2025년 7월 20일 국외투자기구에는 경정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물음 4) 법인세법령상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5점)

물음 5) <사례 2>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5점)

【문제 4】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는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간의 산정이나 기일의 특정에 법정휴일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20점)

<사례 1>

주식회사 A(영리내국법인이며,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하 ‘A회사’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10,000주의 실제소유자인 甲은 본인 명의로 4,000주, 乙 명의로 3,000주, 丙 명의로 3,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거주자 丁은 2023년 5월 12일 甲과 A회사의 주식 10,000주 전부에 관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일 잔금을 지급하면서 甲과 乙, 丙 사이의 기존 명의신탁 합의를 종료하기로 하고 丁과 乙, 丙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甲 명의의 4,000주에 대하여는 丁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나머지 乙, 丙 명의의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25년 3월 31일까지 丁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乙, 丙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2024년 4월 1일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해 丁과 乙, 丙 간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하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25년 7월 1일에 丁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물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2) <사례 1>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6점)

<사례 2>

주식회사 B(영리내국법인이며,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하 ‘B회사’라 한다)는 2022년 3월 4일 280억 원 규모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그 중 B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인 甲이 70억 원, B회사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인 乙이 160억 원, 乙의 외삼촌인 거주자 丙이 50억 원 상당을 각각 인수하였다. 丙은 2024년 9월 6일 그 소유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B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2025년 4월 1일 丙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丙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물음 3) <사례 2>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6점)